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 실시〉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24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명구 · 서지영 · 김기현 · 유상범 · 김태호 · 임종득
김재섭 · 엄태영 · 김승수 · 박덕흠 · 신동욱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7. 17.

3. 회 부 일 : 2025. 7. 18.

※ 의안번호 : 115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 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②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는 그 재직 중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해당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 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 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특정 직위에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 이므로,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해당 직위에 일단 임명 또는 지명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바뀌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있음.¹⁾

즉,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유임하게 하는 경우, 임명이 아닌 유임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요건에 해당²⁾하지 않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유

1)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서 다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임명·지명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나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연임하는 경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에는 인사청문을 거침.

2)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 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임이 이루어짐.

이에 개정안은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부 정책 및 국정과제 수행에 적절한 자질·능력을 갖추었는지, 유임 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국무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인사청문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특정 직위에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직위를 부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국무위원직에 재직 중인 공직자를 임명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① ‘유임’의 사전적 의미는 ‘개편이나 임기 만료 때에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머무르게 함’이기는 하나 유임은 현행 국가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로서 그 의미와 효과가 불분명하고,³⁾ ② 이로 인하여 별도의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행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이 해당 직위에 머무르

3)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참고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27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 즉 재직 중인 상태에서 유임 결정의 시기·여부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인사청문 시기 등이 불확실해지는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27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현 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생략) <신설>	제31조의2(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